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4
----------	------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5월 31일, 김생환 의원(1명)
-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3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생환 의원)

- 우리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5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적 되었듯이, 자치구간 재정 역량의 격차가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 이렇듯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는 매우 심각함. 예를 들면 노원구와 강서구 등 대체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또 복지 및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복지 및 건강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됨.
  -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둘째, 취약자치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 셋째, 복지 및 건강격차해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기초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임.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복지 및 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서울시민은 누구라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고 복지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음.

#### (2) 세부사항별 검토결과

##### 가. 기본원칙 관련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서울시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자치구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하도록(제2항) 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함)등 복지 및 건강 관련 정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복지의 증

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나.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안 제5조에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임.

이를 통해 소득집단별 · 경제활동 상태별 · 연령별 등의 생활실태와 자치구 복지욕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표〉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사업명	2013년 예산 (백만원)	사업개요 및 목적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400	- 서울복지실태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지원	566,585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및 행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운영지원	1,145	- 장애인의 불편없는 이동생활 편의 도모
국민기초사각지대노인장 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843	-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26	-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보건지소 확충 지원	14,366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
자살예방사업	2,500	-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893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280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방문건강관리사업	7,150	-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1,505	- 저소득층 아동 1만명, 초등학교 학생 1만8천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교육, 예방진료, 치료비 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금연서비스 시범사업	100	-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 저하에 기여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	296	- 만12~36개월 이하 취약계층 유아에게 A형간염 보건소 무료예방접종으로 접종비 부담 경감 및 유아 건강보호
암의료비 지원	5,939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암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도모

#### 다. 취약자치구 등 우선 고려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및 건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는 바,

- 이는 복지 및 건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를 고려한 조치로써, 서울시는 누구라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시행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회복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

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라.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안 제8조~제13조)

- 안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자치구의 복지·건강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각종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종합계획이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8조제2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복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자원’ 뿐만 아니라 ‘인력·조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 제1항에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15조의3<sup>1)</sup>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내용 등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보건법 제3조
제출시기	- 4년마다 작성 -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4년마다 작성 -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목적	지역주민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복지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건강향상 도모
내용	-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보건의료수요 측정 -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마.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 (안 제14조~제22조)

-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규정<sup>2)</sup>하고 있는 바,

2)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 있음(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선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측면도 있음.
- 안 제14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목표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의 복지사업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특히 자치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균형 있게 시행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음.
- 안 제15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1항)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제2항)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특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위촉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4명 이내의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됨.

〈표〉 서울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안)와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의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근거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의 목표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li> <li>-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 등</li> <li>-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선정 및 우선 순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 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li> <li>-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 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등</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li> </ul>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

(3) 종합의견

- 최근 자치구간 복지수요·재정여건 등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복지 및 건강 부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있  
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커다란  
의미가 있음.

- 특히 서울시민 누구라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 최초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다만, 본 조례안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사회복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조례안에 규정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답변 :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음.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도 있어서,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의원발의로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질의 : 조례안은 서울시의 복지·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임. 특히 그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해 놓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위원회가 조례안에 규정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및 건강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 및 건강 격차”란 소득·교육·고용·주거·물리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함)간 복지 및 건강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시 복지 및 건강 정책은 자치구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③ 시는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지 및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자치구간 상호 이해를 전제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제7조(취약자치구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및 건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 및 건강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복지 및 건강 관련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2장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제8조(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4년마다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자치구의 복지·건강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한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종합계획의 반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이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0조(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  
계획을 기초로 하여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시책의 추  
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분야 복지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2. 노인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4.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지원 분야 복지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5. 여성 및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6.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건강격차해소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구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2. 건강생활 및 보건서비스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3. 생활보건 분야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
4.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2.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수요와 재정여건
3.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
4. 그 밖에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

제14조(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의 목표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건강실장 및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한 4명 이내의 자치구 부구청장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 유관단체의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보건의료 유관기관의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24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격차의 해소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수렴) 시장은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복지 및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